
한미동맹과 대량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대한 해석

김주원*

Interpretation of the ROK-U.S. Alliance and PSI

Joo-won Kim*

요 약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비핵화이다. 미국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고려했었다. 군사행동 고려는 1993년 중반부터 1994년 중반까지 정점에 달했다. 그러한 공격은 직접적으로 한국전을 일으켰을 것이다. 당시 북핵위기는 북미협상과 한미동맹에 의해 해결되었다. PSI의 목적은 지구적 또는 지역적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일으키는 국가나 비국가행위자에게 대량살상무기, 운반체계, 관련 물질의 확산을 막거나 적어도 억제하는 것이다. PSI의 가장 논쟁의 여지가 있는 활동은 차단이다. 북한은 구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하고, 수출하는 것은 주권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선박에 대한 차단은 선전 포고로 간주할 것이다. 한국이 북한선박에 대한 차단을 시행하면 북한은 도발로 대응할 것이므로 한반도의 긴장은 극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한국은 한미동맹과 남북관계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PSI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을 수 없다.

ABSTRACT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is a Korean Peninsula free of all nuclear weapons.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was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military action to eliminate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alk of military action peaked from mid-1993 through mid-1994. Such an attack might have led directly to a Korean war. At that time the nuclear crisis solutioned by North Korea-United States negotiation and ROK-United States alliance. PSI's purpose is to prevent or at least inhibit the spread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ir delivery systems, and related materials to and from states and non-state actors whose possession would be a serious threat to global or regional security. The most controversial activity of PSI is interdiction. North Korea has expressed grave concern over the initiative, stating that it has a sovereign right to develop, deploy, and export weapons, and that it would view any interdiction of its ships as a declaration of war. If South Korea is to execute interdiction North Korean ships expect tensions to increase dramatically on the peninsula with North Korea doing something quite provocative in response. South Korea cannot help approaching PSI with great caution, since it has to consider the ROK-United States alliance, and inter-Korean relations.

키워드

확산방지구상, 한미동맹, 북핵, 참여수준

Key word

PSI, ROK-United States alliance, North Korea nuclear, Level of participation

* 정희원 : 충남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juwon7699@hanmail.net)

접수일자 : 2012. 03. 07
심사완료일자 : 2012. 03. 28

I. 서 론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로 상대를 공격할 경우 상대방의 전략은 계산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위협은 오히려 불량국가와 비국가행위자로부터 오며, 이들의 공격은 우발적, 자살적일 수 있다[1].

테러리즘 위협은 위협의 존재, 공격당하기 쉬운 목표, 결과에 대한 잠재성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테러리즘 위협은 단체 또는 개인이 능력과 목표물에 대한 공격 의도를 가진다면 존재한다. 위협은 단지 목표물이 공격당하기 쉬운 약점이 있다면 존재한다[2]. 미국 정부는 극단주의자들의 핵무기 테러 가능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9·11 테러 이후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이하 WMD 용어를 사용한다) 테러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다[3]. 전문가들은 발생 가능성이 아닌 시간문제라고 주장한다.

탄도미사일기술과 결합한 화학, 생물, 핵무기는 작은 그룹이 큰 국가에게 제압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4]. 일례로 WMD를 적재한 컨테이너가 세계의 중심항만에서 폭발한다면 대참사를 가져올 것이다[5].

누가 언제 왜 WMD를 찾아가? 알 카에다와 같은 테러리스트들은 파괴적인 무기를 얻으려고 그리고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WMD와 미사일 확산 위협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시 변화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전통적 비확산 조약과 활동은 오늘날 환경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21세기 WMD와 미사일 대확산(對擴散, Counter-proliferation)을 위해서는 불충분하다[6].

테러리스트와 핵무기의 조합을 최대의 제압적 위협으로 인식한 부시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오바마 행정부에 와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7].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4월 5일 미국-유럽연합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한 체코 프라하에서 “핵거래를 막기 위해 우리는 암시장(black markets) 파괴, 운송물질 탐지 및 차단, 금융제재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핵 위협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합쳐 확산방지구상과 세계핵테러방지구상을 영속적인 국제체도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내년 안으로 핵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다”고 하였다.

확산방지구상(PS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이하 PSI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은 2003년 채택 이후 미국의 대확산 전략의 한 부분으로 시행되고 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는 WMD 차단을 위한 PSI를 탄생시켰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PSI는 북한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는 PSI 참여활동을 통해 남북문제와 북핵문제에 영향을 주기 보다는 남북문제와 북핵문제의 변화 과정에서 PSI 참여형태와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8].

본 논문은 1994년 1차 북핵위기 사례와 PSI 무력충돌 가능성을 비교한다. 이후 한반도의 북핵문제 해결 도구로써 PSI가 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미국과 북한의 대립구도 속에서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을 제어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서론과 2장에서 한미동맹, 북핵문제, PSI라는 세 축의 역학구도에 따른 선행연구와 적용이론을 알아보고, 3장에서 한미동맹과 1차 북핵위기 사례를 분석하고 4장에서 PSI의 개념과 미래 그리고 PSI 무력충돌 가능성과 한국의 참여수준을 살펴본다. 5장에서는 결론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남북한 특수성 사이에서 PSI에 대한 한국의 부문별 협력을 제시한다.

II. 선행연구 및 이론의 적용

2.1. 선행연구

한미동맹 관련 연구는 한반도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지향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북핵 관련 연구는 북핵문제의 연대기를 바탕으로 비핵화를 위해 북미관계와 6자회담과 같은 국제공조를 강조한다. PSI 관련 연구는 PSI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와 국가이익, PSI의 필요성과 한계, 정책 제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PSI 관련 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전성훈은 PSI의 배경, 목표 및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PSI를 맞춤형 봉쇄, 강압외교, 공세적 억지로 본다. 이후 북한 핵문제를 통한 우리의 PSI 참여 수준과 특질을 분석한다[9]. 김동욱은 대확산체제로서 PSI를 관련조약과 비교함으로써 국제법적으로 고찰하고 있다[10].

마크 발렌시아는 PSI와 관련한 주권과 관할권 문제, 미국의 장기적 전략과 정치적 쟁점을 다룬다[11]. 마이클 베커는 조약에 기초한 비확산체제의 실패에 대한 해결책으로 PSI를 주장한다[12].

크레이그 알렌은 WMD 비확산 레짐과 9·11 테러 이후 정보 수집과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가행위자와 비국가행위자의 위협을 구분하고 대응을 살펴보고 PSI 차단원칙과 WMD 확산방지를 위한 세계 리더로서 미국의 PSI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PSI의 능력은 확산 위협에 대응하는 참여국가들로부터 나오며, PSI의 적법성은 국제법하에서 그들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참여 국가들의 약속에 있다. 오늘날 확산방지의 성공은 창조적이고 적응성이 있는 다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13].

윌터 그레이 샤프는 WMD 테러리즘의 대항으로서 PSI의 구조를 분석하고 PSI를 통한 대확산 노력을 강조한다[14]. 패트릭 기븐스는 북핵문제, PSI의 정의, 개발, 국제법적 비평, 외교문제 등을 고찰한다[15].

랜드연구소의 마이클 그린버그 외는 2가지 형태의 해상테러리즘 시나리오와 테러리즘의 위협과 책임에 관해 연구한다. 시나리오는 여객선, 유람선 목표 공격과 컨테이너 목표 공격이다. 여객선의 선상폭발 또는 식수오염, 유람선의 선상폭발과 2000년 10월 12일 자살공격으로 인한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USS Cole) 유형피해와 같은 폭발장치 공격 그리고 방사성 물질 또는 핵 폭발 물질을 실은 컨테이너의 항구 또는 선박 내 폭발 등이다. 해상테러리즘 위협의 본질, 정부의 대응과 체계, 해상테러리즘의 위협과 위험 그리고 결과, 해상테러리즘과 민사책임, 정책을 제언한다[16]. 찰스 올프 외(2008)는 PSI 미가입 5개 국가(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파키스탄과 인도, 중국)의 PSI 가입에 따른 비용과 이익 분석 그리고 각국의 PSI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였다[17].

이와 같이 선행연구는 안보개념으로서 PSI를 이해하고 PSI의 국제법적 쟁점을 설명한다. 그리고 비확산체제의 한계와 대확산체제의 실천으로서 PSI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2 이론의 적용: 자극-반응 이론

생물체는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고, 그 자극과 반응의 결합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북한

의 핵보유라는 결과가 원인이 되어 또 다른 행동을 유발한다. 이런 연속의 행동이 한국과 미국의 반응을 일으키고, 그 반응은 다시 북한에 영향을 준다. 이 상호작용이 창출해내는 상황은 다시 당사국들에게 영향을 준다. 상호작용은 어느 한 국가의 행동과 결정에 의해서는 통제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낸다. 남북한은 행동하고, 상대에 대해서 반응한다. 자극과 반응은 정책의 구성부분이다. 남북한은 하나의 게임에서 함께 행동하는데, 서로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행동을 결정한다. 그들은 각각 게임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함께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그들의 상호작용이 창출해내는 긴장에 반응한다[18].

한반도에서 PSI는 한미동맹, 북핵문제와 맞물려 서로 자극 반응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동맹과 남북한 특수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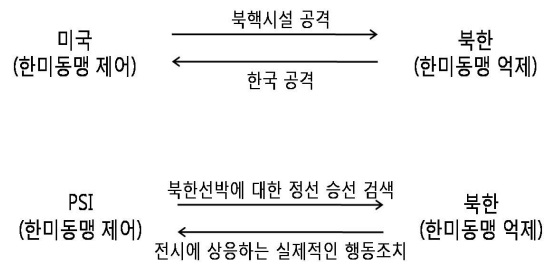


그림 1. 1차 북핵위기와 PSI 무력충돌 가능성 비교
Fig. 1 The comparison of 1st North Korea nuclear crisis and possibility of PSI conflict

그림 1에서와 같이 미국과 북한의 대립으로 발생한 1차 북핵위기와 PSI 무력충돌 가능성은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제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일방적 행동을 막고, 동시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III. 한미동맹과 북핵문제

한미양국의 긴밀한 동맹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한미관계와는 달리, 상호간 경계대상이자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해 끌어안아야 할 동반자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남북관계는

휴전상태임과 동시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할 공동의 정치적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제적 우위와 달리 오늘날 북한이 처해 있는 내·외부 안보 상황은 극심한 경제난이 지속된 가운데 체제유지를 극복해야 하는 당면과업에 봉착해 있다. 이에 따른 생존전략으로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게 됨으로써 미국과 기나긴 협상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19]. 북한 핵 프로그램은 공격 능력이 아닌 붕괴, 혼란, 체제생존, 협상용 지렛대로 디자인 되었다[20]. 향후 북한은 비배치의 범주 내에서 핵능력의 보유가 제공하는 이익과 핵능력의 축소로부터 제공되는 보상이익의 합계가 극대화되는 수준에서 협상을 통해 핵능력을 조정하고자 할 것이다[21].

그러나 미국은 시리아와 다른 국가들에 북한의 핵무기와 의심이 가는 향상된 우라늄 프로그램과 핵지원의 제공을 우려한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비핵화이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 탄압, 우라늄 농축활동, 핵 실험과 확산,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한국과 이웃국가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 자세를 깊이 우려한다. 다자간 외교는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써 약속할 수 있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미국은 역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설득하거나 단념시키려고 상당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22].

3.1. 한미동맹

한미동맹은 우리의 국가이익을 규준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전략으로서 한국 외교정책의 한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다[23]. 9·11 테러 이후 본격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는 미국의 세계적 차원의 변환전략은 한미동맹의 재조정에도 그대로 적용해왔다. 미국의 동맹전략은 지구적 수준, 동아시아 수준, 한반도 수준으로 확대 적용되는 하향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한국정부는 국내 및 한반도 수준, 동아시아 수준, 그리고 지구적 수준으로 확대되는 상향식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결국 한미동맹의 재편을 미국 쪽에서는 21세기의 세계변환전략의 일환으로 바라보고 있는 반면 한국 쪽에서는 국내정치 및 한반도 차원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한국의 이러한 정책은 원하지 않는 긴장관계에 한국이 연루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24].

북한문제에 관한 한미 공조에 있어서도 때로 심각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견이 심할수록 한미 공

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공조를 통한 의견 조정이 더욱 긴요한 과제가 된다. 왜냐하면 양국 간의 대북한 정책 공조를 포기하는 순간 한국은 정책적으로 보다 자유를 갖게 될 것이나, 미국도 역시 제 갈 길로 나갈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만일 북핵문제에 관한 미국의 어떤 일방적 정책이 우려된다면, 그럴수록 한미공조체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공조를 통해 미국의 독자적 행동 가능성을 줄이는 한편, 미국의 행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양국 사이의 이견이 크다고 해서 공조를 포기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된다면 양국 간의 정보 공유에 필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갑자기 위기상황이 도래할 지도 모른다[25].

과거 핵-미사일 위기 때에는 한미동맹이 견고하여, 일체의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1994년의 1차 북핵위기, 1998~1999년의 미사일 위기 시에 이를 무난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한미동맹체제 또는 한·미·일 연합방위체제에 토대를 둔 공동 대응에 힘입은 것이었다[26].

3.1.1. 동북아 지역 안보딜레마: 충돌 또는 현상유지

미국은 군부를 비롯한 북한의 지도층이 북한의 내부 상황을 극복 해결할 유일 최선의 방안으로 전쟁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이는 남북한, 미국·일본·중국의 전쟁개입 가능성과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질서를 파괴시킨다고 본다[27]. 제2의 한국전쟁 시 미국의 참전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공격을 의미한다. 전례 없는 중국·러시아의 2005년 8월 합동군사훈련은 북한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러시아의 한국 전선 지원은 중국이 대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28].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은 지역 국가들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대만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에 있어 위험한 화약고이다. 동아시아 지역은 안보 딜레마로써 덫에 걸린(trapped) 상태로 표현할 수 있다[29].

3.2. 1차 북핵위기

1차 북핵위기는 1993~1994년 당시 북한 핵 문제를 놓고 미국이 군사행동의 일보 직전까지 갔던 사례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4년 6월 16일~6월 17일 레이니 당시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클린턴 대통령과의 통화(6월 17일)에서도 전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당시 한국시간으로 1994년 6월 17일 새벽부터 열린 백악관 회의에서 클린턴 행정부는 한반도 전쟁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증원 전력 파견을 결정하려고 했었다. 당시 미국의 계획은 본격적인 대북 제재에 앞서 증원 전력을 파견해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이 전면적인 핵 사찰을 수용하지 않으면 영변 핵 시설을 폭격하는 단계로 이행하며, 이에 북한이 대응 공격에 나설 경우 40만 명의 대규모 증원군을 파견해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치른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백악관에서 일종의 전쟁 회의를 하고 있을 때,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과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 개발 중단 및 미국 주도의 대체에너지 제공을 골자로 한 협상안에 극적으로 타협함으로써 미국의 한반도 전쟁 계획이 취소된 것이다. 이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근본적인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에게서 민족 공동체의 소멸을 가져올 수 있는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인 반면에,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는 것이 한반도 전쟁을 억제하는 것보다 상위의 목표에 있다는 것이다[30].

1994년 북한 핵을 중심으로 하는 위기 상황에서의 한미관계는 ‘방기’와 ‘연루’라는 동맹딜레마의 순환으로 점철되었다.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북미 간 단독 협상과정은 한국 측에서 보면 한국의 안보이익을 희생할 지도 모른다는 ‘방기’의 딜레마가 나타났고, 미국의 대북 공격 의도는 한국의 입장에서 ‘연루’의 딜레마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설득에 의하여 미국의 공격이 무산되었다면 이는 동맹관계에서 나타나는 ‘연루’의 딜레마의 역기능이라 볼 수 있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국 단독으로 강경책을 사용할 수도 있었으나 오히려 동맹 약소국인 한국의 반대에 부딪쳐 강대국의 자율성을 양보하였다는 점이다[31].

1차 북핵위기시 군사공격은 직접적으로 한국전쟁을 가져온다. 북한은 한국을 즉각 공격한다. 북한 핵시설에 대한 외과적 공격은 북한의 의도와 관계없이 일단 시작된 충돌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32].

또한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고든 프레이크(L. Gorden Flake)는 “한반도에는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확실한 레드라인 중 하나는 북한이 WMD를 테러국 혹은

제3국에 판매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WMD가 테러리스트들에게 확산되는 경우 바로 북한은 미국의 공격목표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33].

IV. PSI의 미래

4.1. PSI의 기원

PSI의 기원은 1990년대 초 클린턴 행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탈냉전 후 미소간의 핵역지력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안정기조가 구소련의 해체로 무너지면서 구소련으로부터 WMD나 WMD 관련 물질 및 기술의 유출 가능성에 미국은 심각한 우려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불량국가나 테러단체가 WMD를 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된 것이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대두되었다.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조치로 미국은 기존의 비확산보다 더 강제적 개념이 추가된 대확산조치를 강구하게 되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는 WMD 확산방지를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정책으로 설정하고, 2002년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보고서, WMD와의 투쟁을 위한 국가전략 그리고 테러와의 투쟁을 위한 국가전략 보고서 등을 통해 불량국가나 테러단체의 WMD 획득 차단과 폐기를 강구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차단은 대확산 전략의 핵심요소이다. 2003년 5월 31일 부시 대통령은 폴란드 크라쿠프(Krakow)에서 PSI를 발표하였다. 2003년 9월 4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11개국은 PSI 차단원칙을 채택하였다[34]. 11개 핵심 그룹 국가들은 미국의 우방국, WMD 확산방지 조약국이다.

4.2. PSI의 개념

PSI는 WMD 확산에 관심이 있는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 간의 확산 및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좀 더 역동적이고, 창의적이며, 적극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려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WMD 확산을 시도하는 국가가 WMD와 관련기술을 거래하기 어렵도록 WMD 대확산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다[35]. 이를 위한 PSI 협력 유형은 그림 2에서와 같이 미국 주도의 결속력 있는 헤게모니 협력으로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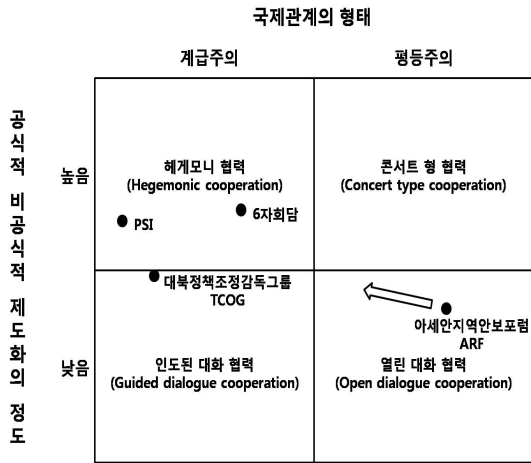


그림 2. 부시 행정부 2기와 9·11 테러 이후 동아시아 다자주의 협력의 유형[36]
 Fig. 2 A typology of multilateralism in terms of the qualities of cooperation in East Asia since the second Bush administration and 11 September 2001

PSI 활동은 특별한 시스템이 아니라 일상적인 행정 절차에 의해 수행된다. WMD 불법거래 관련 정보교환, WMD 관련물자 수출거부, 항만에서의 컨테이너 검색, 선박·항공기의 회항 유도 등은 모두 일상적인 행정 절차의 일환이다. 가장 긴장도가 높은 상황으로는 군함이 해상에서 의심 선박에 승선·검색하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해상 검색이라 하더라도 선박 국적국의 동의가 없거나 유엔해양법협약상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해에서 외국 선박을 검색할 수 없다. PSI 출범 이후 공해에서 강제력으로 외국 선박을 승선·검색한 사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37]. PSI의 탄생동기가 WMD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PSI는 불량국가와 테러집단의 각종 범죄행위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약, 인권, 위조지폐, 돈세탁 등의 포괄적인 범죄행위를 포함한다[38].

PSI의 핵심활동인 차단은 WMD 및 관련 물품이 확산 우려 국가 또는 테러 단체에 의해 보유되거나 군사 무기로써 완성되는 것을 사전에 막는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이 같은 예방적 성격의 조치는 WMD 및 관련 물품이 무기로써 완성된 뒤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선제공격 행동과 구별될 수 있다[39].

4.3. 법적한계와 개발

PSI의 미래는 무엇인가? PSI는 세계 비확산 노력의 중요한 기여이고, 확산 관련 밀매에 대한 강한 제지이다. PSI는 수출통제, 규제시스템, 법 집행 협력을 강화하고 확산 관련 네트워크를 제거하고 확산활동을 심판대료 이끄는 역할을 한다. 미국은 진정한 세계파트너십, 전문가연락네트워크, WMD 관련 선적 차단활동 등을 통해 PSI 성공을 유지하고 구축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 국제법을 개발하고 PSI 파트너들과 효율적 대화와 작동절차에 따라 협력을 계속할 것이다[40].

PSI의 실시를 위해서는 참여국의 국내법과 국제법의 근거가 필요하다.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적행위 중사, 노예거래 중사, 무국적선박, 무허가방송, 허위국기계양은 기국주의의 예외로서 공해상 임검의 실시가 가능하다(유엔해양법협약 제110조).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가령 A국의 선박이 WMD를 적재하고 공해상을 항행하는 경우 유엔해양법협약이 인정하는 기국주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선박을 차단할 수 있는 국제법상 근거는 없다. 또한 영해에서 WMD를 적재한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9조 제2항에서 열거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특히 유엔해양법협약 제19조 제2항 (f)호는 유해통항의 유형으로 군사기기의 발진·착륙 또는 탑재를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적 의미의 군사기기의 탑재에는 WMD 적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 적재된 화물의 성격과 군사기기의 탑재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본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 제25조는 무해통항의 일시정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연안국의 안전보호에 긴요하며 외국 선박을 차별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밖에 없는 한계가 따른다. 유엔해양법협약의 개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국제의견 수렴에 한계가 있다. 이에 미국은 그러한 법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주요 선적국 간 양자 승선협정을 체결하였다[41]. 양자승선협정은 중요한 단계이다. PSI를 더욱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WMD 관련 물질의 차단을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시킨다[42]. 양자 승선협정 체결 국가는 앤티가 바부다(Antigua and Barbuda), 바하마(Bahamas), 벨리즈(Belize), 크로아티아(Croatia), 키프로스(Cyprus), 라이베리아(Liberia), 몰타(Malta), 마셜 제도(Marshall Islands), 몽골(Mongolia), 파나마(Panama),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이다[43].

또한 WMD 통제를 위해서 각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 제1540호(2004. 4. 28)가 채택되었는데, 미국은 이로 인해 PSI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각국이 자기 영해 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44].

2006년 10월 9일 북한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결의 제1718호(2006. 10. 14)는 북한 WMD 및 관련 물질이나 장비, 자금 등의 이동을 차단하도록 되어 있다. 유엔 안보리결의 제1874호(2009. 6. 12)는 북한선박에 대한 해상검색 조치를 더욱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5].

PSI는 WMD의 불법적인 확산의 차단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상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 국제법 질서와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WMD 확산 차단을 위해 시작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PSI 참여 국가들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제법 질서와의 충돌 가능성에 기한 비판이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46]. 현 상황에서 PSI 조치의 국제법적 합치성은 사안별로 구체적 맥락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원칙적 결론만 도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47].

4.3.1. 국제관습

19세기 동안 영국은 대서양 국가 간 노예무역을 금지하기 위한 큰 노력의 결과로서 공해상 입검권과 같은 공해상 차단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 그러나 이 입법 성공은 단지 다수의 양자 조약들과 같은 협상을 통해 가능함이 증명되었고 차례로 다자조약의 협상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국제관습법 노력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영국의 대서양 노예무역 금지를 위한 역사는 공해상 차단권의 국제관습법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증명한다[48]. 분석가들은 PSI의 해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존하는 국제법과 법적변화를 위한 자국으로서의 잠재성을 고려하고 있다. PSI는 양자 또는 다자조약의 방법으로 새로운 법적 권위를 촉진한다. 명백하지는 않지만 PSI는 새로운 국제관습법화로 나아갈 것이다[49]. 진정한 세계 파트너십과 전문가 네트워크, WMD와 관련 물질 선적을 금지하는 협력적 작업을 통해 미국은 PSI의 성공을 유지하고 확립하려고 한다. 미국은 더 나아가 협력

적 강제를 위한 국제법을 개발하고 산업에 있어 대화와 협력을 증가할 것이다. 미국은 역시 계속해서 부드럽고 효과적인 통신과 작업 절차로 미국의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다[50].

4.4. PSI에 대한 부문별 협력

4.4.1. PSI 무력충돌 가능성

북한은 2009년 5월 27일 우리의 PSI 참여(2009. 5. 26)에 대하여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① PSI 참여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다. ② 북한군은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다. ③ 당면하여 서해5도(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 수역 군함 및 일반선박들의 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2009년 5월 27일 조평통 성명을 통해서도 다음과 같이 위협 하였다. ① 북한선박에 대한 정선·승선·검색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보복할 것이다. ② 전시에 상응하는 실제적인 행동조치로 대응할 것이다[51].

복합적인 면이 작용하였지만 결과론적으로 북한은 자신들의 성명을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사건,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이행하였다.

이후 북한선박에 대한 우리측의 PSI 차단은 직접적 무력충돌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자신들의 국가주권과 책임 그리고 성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위해서 무력도발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

신성호는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원하지는 않더라도 PSI로 인해 해상에서의 우발적인 충돌과 이로 인한 전면전으로의 상승곡선을 일으킬 위험을 지적한다[52]. 향후 북미간 핵 마찰이 다시 악화될 경우 한반도에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와 같은 일대 위기가 찾아 올 수 있다. 북한이 미국의 압박에 대해 WMD의 해외 유출을 시도하거나 의심되는 행위를 할 경우 미국은 북한 선박에 대한 전면적인 검색과 한반도 주변 해양에서의 해상격리(maritime quarantine)로 대응할 것이다. 한반도 근해에서 북한의 선박통행을 제한하는 미국의 해상격리가 시행될 경우, 미국 북한 간 1962년의 쿠바 미사일 위기와 같은 긴박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53].

쿠바 미사일 위기시 케네디는 매과와 비둘기과 간의 절충안으로 해상격리를 선택한다. 군부도 해상격리에 동의했지만 그 이유는 케네디의 의도와는 달랐

다. 군부에게 해상격리는 전쟁 직전의 압박행위로서, 압박의 과정에서 소련의 도발을 언어낼 수 있는 좋은 명분이자 함정이었다. 반면, 케네디는 해상격리과정에서 소련의 진정한 메시지를 확인하고 압박을 통해 소련과의 외교적 타협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54].

미국의 쿠바 해상격리는 미국 또는 미주기구의 긴급 피난으로서 상대국에 불법행위는 없으나 자국의 국익에 중대한 침해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해진 것이었다[55]. 미국 정부는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쿠바에 대해 취하였던 해상격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전혀 예방적 정당방위론을 원용하지 않고, 유엔헌장 제7장의 지역적 평화유지에 의존했다[56].

4.4.2. 대상국별로 참여수준을 조절하는 부문별 협력

북한은 50여 년 전에 적화통일을 위하여 불의의 무력남침을 감행함으로써 민족적 재앙을 일으켰고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수많은 도발과 위협을 계속해 오고 있다는 경험적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향후로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월함이 증명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체제를 양보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이념과 요구에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는 이상, 북한이 직접 또는 간접 등 온갖 방법으로 우리의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할 것이다. 나라의 체제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국가의 안보에는 한치의 허술함이나 안이한 판단을 허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PSI 참가문제는 WMD 비확산을 위한 국제규범이란 보편성과 남북간 무력충돌 가능성이란 특수성 사이에서 고민해야 할 ‘뜨거운 감자’다. 우리 정부의 PSI 직접 참가는 남북간 충돌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이후에도 PSI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 북한의 WMD 해결을 위해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57].

PSI 참여는 WMD 확산 위험을 줄이고 국제이익에 기여한다. 국가주권과 독립을 고려한 국가들은 PSI 참여에 있어 ① 국가의 외교정책 ② 유엔해양법협약과 같은 국제법 위반의 우려 ③ 국내정치상황 ④ 약속과 자발적 참

여가 의미하는 PSI 참여에 대한 오해 등을 고려한다[58]. 결과적으로 PSI 참여의 위험 노출은 비참여의 위험 노출보다 적다[59].

PSI 정책은 전면참가를 원칙으로 하되 운용상에 있어서 대상국에 따라서 참여수준을 조절하는 조절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면참가 원칙 하에서, 북한이 아닌 제3국에 대한 PSI 차단 작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 하되, 북한에 대한 PSI 작전에는 정보제공이나 후방지원 등 부문별 협력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다. 대북한 PSI 작전에서 한국은 눈에 덜 띄는 역할을 맡고 다른 참가국들이 차단과 검색을 주도하는 조절된 접근은 핵확산 방지라는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의 PSI 참여를 이유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를 할 수 있는 구실을 주지 않을 것이다[60].

남북해운합의서 내용을 고려하면, 북한 선박의 한국 영해 내 항행을 PSI 원칙에 따라 승선·검색할 상황은 거의 없어 보이며, 비록 남북 항로대가 WMD 확산에 이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직접적 관련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한국은 북한 선박이 한국 영해 내 항로를 운항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남북해운합의서가 합의한 바대로 북한 선박은 지정된 해상 항로대를 따라 남북 간 화물을 운송할 수 있으며, 제3국으로 운송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해운합의서는 의심되는 북한선박을 필요에 따라 정선·승선·검색을 하고, 위반 선박에 대해 퇴거조치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PSI와 무관하게 행동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61].

V. 결 론

1차 북핵위기에에서 미국의 영변 핵시설 폭격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즉각 공격을 의미했다. 당시 미국의 일방적 행동은 한미동맹에 의해 제어되었다. PSI 무력충돌 가능성은 1차 북핵위기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즉 미국과 북한 간 해상시위 대립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수 있다. PSI에 대한 우려는 미국은 국제법 틀 속에서 행동할 수 밖에 없지만, 역설적으로 PSI는 북한 군부의 오판과 도발결심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북한을 입출항하는 WMD 의심선박에 대한 입검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빈도가 높을 것이다. PSI에 있어 북한(기국)이 공해상 자국선박에 대한 입검에 동의할 리 없으므로, 미국은 PSI 참여국과 제3국의 협조를 통해 영해 및 접속수역 내에서의 제한적 검색 또는 항만국 통제를 시행할 것이다. 우리측 수역에서의 입검은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안정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PSI로 인한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의 무력분쟁은 한미동맹에 의해 상호구속 받고 있는 형국이다. PSI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대상국별로 참여수준을 조절하는 부분별 협력, 한미동맹 강화, 남북간 대화 협력을 통한 긴장완화이다.

참고문헌

- [1] 이현경, “신국제안보환경하 미국의 안보정책”, 한국동북아논총, 제31집, p.124, 2004.
- [2] Michael D. Greenberg, Peter Chalk, Henry H. Willis, Ivan Khilko, David S. Ortiz, *Maritime Terrorism: Risk and Liability*,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p.143, 2006.
- [3] 이태윤, “초국가적 위협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핵테러의 발생가능성: 현황·전망·대안-”, 국가위기관리연구, 제3권, 제2호, p.4, 2009.
- [4] Joel A. Doolin,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Naval War College Review*, Vol.59 Issue 2, p.29, 2006.
- [5] Anthony Bergin,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Implications for the Indian Ocean”,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 Coastal Law*, Vol. 20 Issue 1, p.86, 2005.
- [6] Robert G. Joseph,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a model for futur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National Institute for Public Policy”, *Comparative Strategy*, Vol. 28 Issue 5, p.397, 2009.
- [7] 김영호, “오바마 행정부의 핵군축 정책과 한국 안보”, 국방연구, 제53권, 제1호, p.62, 2010.
- [8] 장은석, “한국의 확산방지구상(PSI) 정식참여의 의미와 협력방향”, 국제정치논총, 제50집, 제1호, pp.208-209, 2010.
- [9] 전성훈,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한국언론재단, 2007.
- [10] 김동욱,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한국학술정보, 2010.
- [11] Mark J. Valencia,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Making Waves in Asia*, New York: Routledge, 2005.
- [12] Michael A. Becker, “The shifting public order of the oceans: freedom of navigation and the interdiction of ships at sea”,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Winter 2005.
- [13] Craig H. Allen, *Maritime Counterproliferation Operations and the Rule of Law*, Westport, Connecticut, USA: Praeger Security International, Greenwood Publishing Group, 2007.
- [14] Walter Gary Sharp,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The legacy of Operacion Socotora”, *Transnational Law & Contemporary Problems*, Spring 2007.
- [15] Patrick Gibbons, “Proving the point: North Korea and the ratification of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Loyola Maritime Law Journal*, 2009.
- [16] Michael D. Greenberg, Peter Chalk, Henry H. Willis, Ivan Khilko, David S. Ortiz, *Maritime Terrorism: Risk and Liability*,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2006.
- [17] Charles Wolf, Jr., Brian G. Chow, Gregory S. Jones, *Enhancement by Enlargement: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2008.
- [18] 이수혁, *북한은 현실이다: 전 6자회담 수석대표가 말하는 통일외교 전략*, 21세기북스, p.235, 2011.
- [19] 김제철,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안보적 과제와 대비방향”, *조선대학교 대한정치학회보*, 제17집, 제2호, p.386, 2009.
- [20] Jacques L. Fuqua, JR., *Nuclear Endgame: The Need for Engagement with North Korea*, Westport, Connecticut · London, USA: Praeger Security International, Greenwood Publishing Group, p.10, 2007.
- [21] 임수호, “실존적 억지와 협상을 통한 확산: 북한의 핵정책과 위구조성외교(1989~2006)”,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301-302, 2007.

- [22]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Apparent Progress in Negotiations to End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02, No. 4, pp.885-887, 2008.
- [23] 박인휘, 박정희, "김대중의 국가이익과 한미관계: 동맹-자주의 분절 혹은 통합", *세계지역 연구논총*, 제28집, 제1호, p.23, 2010.
- [24] 하영선, 남궁곤, *변환의 세계정치*, 을유문화사, p.263, 2007.
- [25] 이용준, *북한핵: 새로운 게임의 법칙*, 조선일보사, p.222, 2004.
- [26] 홍관희, "북핵협상을 통해 본 미국의 대북정책: 제 4차 6자회담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8집, 제 2호, p.84, 2005.
- [27] 이현경,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실태와 미국의 대응: 전략과 시뮬레이션*, 통일연구원, p.33, 2001.
- [28] Peter C. Y. Chow, *Economic Integration, Democratization and National Security in East Asia: Shifting Paradigms in US, China and Taiwan Relations*, Northampton, MA: Edward Elgar Publishing, Inc., p.280, 2007.
- [29] Marianne Péron-Doise, "Going nuclear in Northeast Asia: a global view", *Asia Europe Journal*, Volume 3, Number 4, p.509, 2005.
- [30] 정육식, *동맹의 뒷, 지독한 역설: 두 개의 코리아와 미국*, 삼인, pp.45-47, 2005.
- [31] 이경수, "박정희 ·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정책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23, 2007.
- [32] Michael J. Mazarr, "Going Just a Little Nuclear: Nonproliferation Lessons from North Korea",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 2, p.113, 1995.
- [33] 송대성, *한반도 평화확보: 경험, 방안, 그리고 선택*, 한울아카데미, pp.324-325, 2007.
- [34] 황성욱, "PSI 참여, 전략적 시기 선택 중요", *통일한국*, 제26권, 제7호, pp.41-42, 2008.
- [35] 박기련 · 김연철, "PSI와 바람직한 한국의 선택", *전략연구*, 통권 제43호, p.131, 2008.
- [36] Linus Hagström and Marie Söderberg, *North Korea Policy: Japan and the great powers*, New York: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p.159, 2006.
- [37] 외교통상부 군축비확산과, "PSI 바로알기", p.6, 2009.
- [38] 전성훈, *제2차 6자회담 이후 북핵문제 해결 전망*, 통일연구원, p.85, 2004.
- [39] 이서향, "PSI의 최근 동향과 전망", *외교안보 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p.3, 2008.
- [40] Charles Wolf, Jr., Brian G. Chow, Gregory S. Jones, op. cit., pp.47-48.
- [41] 김동욱, op. cit., pp.390-391.
- [42]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for Searching Potential WMD Vessels",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8, No. 2, p.357, 2004.
- [43] 미국 국무부, [검색일자: 2012. 3. 1], <<http://www.state.gov/t/isn/c27733.htm>>.
- [44] 안문석, *노무현 정부와 미국*, 한국학술정보, p.72, 2007.
- [45] 백승주, "집중분석 I PSI 가입 의미와 전망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PSI) 전면가입이 한반도 분쟁의 불씨 안 된다", *북한*, 7월호, p.120, 2009.
- [46] 정서용, "남북관계의 측면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서울국제법 연구*, 제15권, 제1호, p.3, 2008.
- [47] 이재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조치의 국제통상법적 함의에 관한 고찰", *서울국제법 연구*, 제14권, 제1호, p.25, 2007.
- [48] Michael Byers, "Policing the High Seas: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8, No. 3, pp.534-536, 2004.
- [49] Ibid, p.528.
- [50] The Bureau of International Security and Nonproliferation, U.S. Department of State, Washington, DC,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PSI)", *The DISAM Journal of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Management*, Vol. 30 Issue 3, p.42, 2008.
- [51] 통일부, "PSI 참여에 대한 북한 판문점대표부 성명 관련 참고자료", p.1, 2009. 5. 28.
- [52] 신성호, "확산안보구상(PSI)과 한반도", *동아시아 연구원 외교안보센터, 국가안보패널 정책 보고서*, 제13호, p.17, 2005.

- [53] Ibid, p.4.
- [54] 안병진, “62년 ‘쿠바 핵 미사일 위기’의 역사적 교훈과 위기의 한반도-베두인 전설의 역설.”, 역사비평, 통권 제71호, p.300, 2005.
- [55] 이민효, “해상봉쇄법의 변천과 한반도에서의 적용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집, 제46권, 제1호, p.178, 2001.
- [56] 김한택, *현대국제법.이론과 사례연구*, 지인북스, p.299, 2007.
- [57] 고유환, “한미동맹 재조명과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 평화학연구, 제8권, 제1호, pp.119-120, 2007.
- [58] Charles Wolf, Jr., Brian G. Chow, Gregory S. Jones, *U.S. Combat Commands’ Participation in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A Training Manual*,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p.28, 2009.
- [59] Ibid, p.50.
- [60] 전성훈, “PSI와 한국안보: 분석과 제안”, 국가전략, 제14권, 제2호, p.57, 2008.
- [61] 박창권, “PSI의 개념과 한국의 PSI 전면 참여 의미”, 해양연맹지, 바다 30호, p.19, 2009.

저자소개



김주원(Joo-Won Kim)

1999년 한국해양대학교 선박운항
시스템공학과 학사

2004년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

2010년~현재 충남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 관심분야: 해양안보, 해양정치